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01

- 전기를 다루는 작업을 할 때 일반적인 안전수칙 혹은 시행법규가 있는지?
- 소모품성 자재를 교체할 때 다른 업체의 담당자가 전원 차단을 이행하지 않고 작업하다 감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전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안전수칙은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규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수칙이라 해도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나 작업의 특성상 활성상태의 작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에 보수공사 도급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나 사고결과에 대한 과실의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5)

02

기존건물 변전소(2,600kW) 상주선임자가 동일사업주 명의의 인근 창고(저압 60kW) 및 자가용전기설비(새로 매입한 대지에 설치예정)를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 따라서 새로 매입한 대지에 설치되는 전기설비가 동일명이라 할 경우에도 새로운 수전설비가 설치되는 각각의 장소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5)

03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인상 결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는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인상제재방안이 있는지요?
- 산업자원부에서 수수료 인상에 관한 고시를 하는지요?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에서 고시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가 상호간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고객과의 쌍방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비용 등을 감·결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수수료·계약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경쟁을 통한 업체 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키면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01. 19)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 사례

01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말하는 전력시설물의 정의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범위와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용어정의는 동법 제2조(정의)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9)

02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말하는 용량증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 단순한 변압기의 용량증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단기변경, 전선로변경 등으로 전류용량의 변경도 해당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2)

03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중 “~자가 용전기설비중 변압기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변압기 용량증설 없이 변압기 2차측 부하신설시 소속직원중 설계사 면허를 가진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전기사업법」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변압기 용량증설 없이 변압기 2차측 부하신설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동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2)

04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관련하여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소속직원중 설계사 면허를 가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설계범위와 설계용역을 발주해야할 범위에 대하여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중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설계사)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 모든 전력 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 :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 참고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